

대구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331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331264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1. 15 선고 2020가단139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승이

변론종결 2023. 5. 3.

판결선고 2023. 5. 3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1. 15. 선고 2020가단139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판사 윤남현

별지